

제 1회

국어 비문학 영역

성명

수험번호

- 문제지를 무단으로 배포하거나 상업적으로 이용하지 마십시오.
- 수능 및 모의고사의 난이도보다 다소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당황하지 말고 침착하게 끝까지 풀어주세요.
- 모의고사가 아닌 3개의 지문만이 포함된 문제지입니다.
- 이번 프린트에서는 법에 관련된 지문이 2개나 됩니다. 지루해도 잘 참고 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난이도 A-)

2016 국어B형 25-28번

변론술을 가르치는 프로타고라스(P)에게 에우아틀로스(E)가 제안하였다. “제가 처음으로 승소하면 그때 수강료를 내겠습니다.” P는 이를 받아들였다. 그런데 E는 모든 과정을 수강하고 나서도 소송을 할 기미를 보이지 않았고 그러자 P가 E를 상대로 소송하였다. P는 주장하였다. “내가 승소하면 판결에 따라 수강료를 받게 되고, 내가 지면 자네는 계약에 따라 수강료를 내야 하네.” E도 맞섰다. “제가 승소하면 수강료를 내지 않게 되고 제가 지더라도 계약에 따라 수강료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까지도 이 사례는 논리 난제로 거론된다. 다만 법률가들은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본다. 우선, 이 사례의 계약이 수강료 지급이라는 효과를, 실현되지 않은 사건에 의존하도록 하는 계약이라는 점을 살펴야 한다. 이처럼 일정한 효과의 발생이나 소멸에 제한을 덧붙이는 것을 ‘부관’이라 하는데, 여기에는 ‘기한’과 ‘조건’이 있다. 효과의 발생이나 소멸이 장래에 확실히 발생할 사실에 의존하도록 하는 것을 기한이라 한다. 반면 장래에 일어날 수도 있는 사실에 의존하도록 하는 것은 조건이다. 그리고 조건이 실현되었을 때 효과를 발생시키면 ‘정지 조건’, 소멸시키면 ‘해제 조건’이라 부른다. 민사 소송에서 판결에 대하여 상소, 곧 항소나 상고가 그 기간 안에 제기되지 않아서 사안이 종결되든가, 그 사안에 대해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이 선고되는가 하면, 이제 더 이상 그 일을 다룰 길이 없어진다. 이때 판결은 확정되었다고 한다. 확정 판결에 대하여는 ‘기판력(既判力)’이라는 것을 인정한다. 기판력이 있는 판결에 대해서는 더 이상 같은 사안으로 소송에서 다룰 수 없다. 예를 들어, 계약서를 제시하지 못해 매매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패소한 판결이 확정되면, 이후에 계약서를 발견하더라도 그 사안에 대하여는 다시 소송하지 못한다. 같은 사안에 대해서도 모순되는 확정 판결이 존재하도록 할 수는 없는 것이다.

확정 판결 이후에 법률상의 새로운 사정이 생겼을 때는, 그것을 근거로 하여 다시 소송하는 것이 허용된다. 이 경우에는 전과 다른 사안의 소송이라 하여 이전 판결의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다. 위에서 예로 들었던 계약서는 판결 이전에 작성된 것이어서 그 발견이 새로운 사정이라고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나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집을 비워 달라고 하는 소송에서 임대차 기간이 남아 있다는 이유로 임대인이 패소한 판결이 확정된 후 시일이 흘러 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임대인은 집을 비워 달라는 소송을 다시 할 수 있다. 계약상의 기

한이 지남으로써 임차인의 권리에 변화가 생겼기 때문이다. 이렇게 살펴본 바를 바탕으로 P와 E 사이의 분쟁을 해결하는 소송이 어떻게 전개될지 따져 보자. 이 사건에 대한 소송에서는 조건이 성취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법원이 E에게 승소판결을 내리면 된다. 그런데 이 판결 확정 이후에 P는 다시 소송을 할 수 있다. 조건이 실현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두 번째 소송에서는 결국 P가 승소한다. 그리고 이때부터는 E가 다시 수강료에 관한 소송을 할 만한 사유가 없다. 이 분쟁은 두 차례의 판결을 거쳐 해결될 수 있는 것이다.

1. 위 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기판력이 작용한 소송에 관련된 새로운 사정이 뒤늦게 발생한 경우에도 해당 사건에 대한 새로운 확정 판결을 내릴 수 없다.
- ② P와 E의 계약에서 E의 첫 승소는 계약의 효과를 발생시키기 위한 유일한 부관이자 조건이다.
- ③ 종결된 사안에 대한 새로운 사정이 기판력이 작용하기 시작한 시점 이전에 존재하던 것인 경우에만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 ④ 계약에 정지 조건이 제시되었을 때 계약의 효과를 유효하게 하려면 조건이 실현되어야 한다.
- ⑤ 계약에 부관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해당 계약의 유효성은 미래의 사건 발생에 의존할 수 없다.

2. 위 글에 제시된 P와 E의 재판에 대한 추론으로 적절한 것은 무엇인가?

- ① P와 E의 두 번째 재판에서 확정 판결이 이루어진 후에는 기판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새로운 사정이 발생하더라도 E가 P에게 소송을 걸어서 승소할 수 없다.
- ② P와 E의 수강료에 대한 재판은 적어도 2회 진행되지만 동일한 사안으로 법원에서 다루어진다.
- ③ P와 E는 2회의 재판에서 계약의 조건에 대한 유효성을 각자 일관된 입장에서 주장할 것이다.
- ④ 소송을 하지 않고 P와 E가 맺은 계약과 부관만으로 사안을 해결하고자 할 때 E는 계속 수강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 ⑤ P에게 유리한 판결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첫 재판에 대한 기판력이 작용하지 않아야 하므로 기한 내에 항소하여야 한다.

[3~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난이도 B)

2016년 법학적성시험 언어이해 20-22번

현대 사회에서 국가는 개인의 권리와 이익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행정 작용을 한다. 이에 따라 국가 활동으로 인해 손해를 입은 개인을 보호할 필요성이 커지게 되었다. 국가배상 제도는 국가 활동으로부터 손해를 입은 개인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지운다. 이 제도는 19세기 후반 프랑스에서 법

원의 판결 곧 관례에 의해 도입된 이래, 여러 나라에서 법률 또는 관례에 의해 인정되었다. 우리나라도 국가배상법을 제정하여 공무원의 법을 위반한 직무 집행으로 손해를 입은 개인에게 국가가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고 있다.

법관이 하는 재판도 국가 활동에 속하는 이상 재판에 잘못이 있을 때 국가가 전적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것이 타당하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재판에는 일반적인 행정 작용과는 다른 특수성이 있어 재판에 대한 국가배상 책임을 제한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그 특수성으로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재판의 공정성을 위하여 법관의 직무상 독립이 보장되고 있다는 점이다. 만일 법관이 재판을 함에 있어서 사실관계의 파악, 법령의 해석, 사실관계에 대한 법령의 적용에 잘못을 범하였다는 이유로 국가가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면, 법관은 이러한 손해배상 책임에 대한 부담 때문에 소신껏 재판 업무에 임할 수 없게 될 것이다.

법적 안정성을 위하여 확정 판결에 기판력이 인정된다는 것도 재판의 특수성의 하나이다. 이는 부단히 반복될 수 있는 법적 분쟁을 일정 시점에서 사법권의 공적 권위로써 확정하여 법질서를 유지하고자 하는 것이다. 만약 일단 기판력이 생긴 확정 판결을 다시 국가배상 청구의 대상으로 삼는 것을 허용한다면, 그것만으로도 법적 안정성이 흔들리게 되기 때문이다.

재판에는 심급 제도가 마련되어 있다는 점도 특수성으로 볼 수 있다. 심급 제도는 법원의 재판에 대하여 불만이 있는 경우 상위 등급의 법원에서 다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소송 당사자는 법률에 의하여 정해진 불복 절차에 따라 상급심에서 법관의 업무 수행에 잘못이 있음을 주장하여 하급심의 잘못된 결과를 시정할 수 있다. 심급 제도와 다른 방식으로 잘못된 재판의 결과를 시정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 재판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을 넓게 인정하면 심급 제도가 무력화되어 법적 안정성을 해치게 된다.

①독일에서는 법관의 직무상 의무 위반이 형사법에 의한 처벌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만 국가배상 책임이 인정된다고 법률에 명시하고 있다. 이와 달리 우리나라의 국가배상법에는 재판에 대한 국가배상 책임을 부정하거나 제한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다. 따라서 재판에 대한 국가배상법의 적용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우리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재판에 대한 국가배상 책임의 인정 범위를 좁히고 있다. 먼저, 대법원은 비록 확정판결이라고 하더라도 법관이 그에게 부여된 권한의 취지에 명백히 어긋나게 이를 행사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재판의 위법성을 인정한다. 뇌물을 받고 재판한 것과 같이 법관이 법을 어길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거나 소를 제기한 날짜를 확인하지 못한 것과 같이 법관의 직무 수행에서 요구되는 법적 기준을 현저하게 위반했을 때가 이에 해당한다. 따라서 법관이 직무상 독립에 따라 내린 판단에 대하여 이후에 상급 법원이 다른 판단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재판의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그리고 대법원에 따르면, 재판에 대한 불복 절차가 마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국가배상 책임을 묻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 불복 절차를 따르지 않은 탓에 손해를 회복하지 못한 사람은 원칙적으로 국가배상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단, 불복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 자체가 법관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예외적으로 국가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3. 위 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하급 법원의 법관이 법적으로 요구되는 책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아 잘못된 판결이 이루어진 경우 중 국가배상법을 적용할 수 있는 경우가 존재한다.
- ② 국가에서는 법률 집행의 독립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판력이 적용된 사건에 대한 국가배상 청구를 인정하지 않는다.
- ③ 한국 법원의 경우 사법기관에 대한 국가배상법의 적용이 제도적으로 보장되어 있다.
- ④ 유사한 사건에 대한 두 판결이 다른 경우에도 사실관계에 따른 법령의 적용이 잘못되었다는 이유로 한 재판에 대하여 국가배상법을 적용할 수는 없다.
- ⑤ 국가배상법 적용 범위에 대한 제한은 국가배상법 자체에서 직접 근거를 찾을 수는 없다.

4. ㉠와 ㉡를 비교하여 이해한 것으로 옳은 것은?

- ① ㉠와 ㉡의 법률 조항에서는 일반 행정 작용과 다른 사법 집행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국가배상 책임을 제한한다.
- ② ㉡와 달리 ㉠에서는 법관의 위법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기판력이 발생한 재판에 한하여서 판결에 대한 불복종을 인정한다.
- ③ ㉠㉡에서는 국가배상 청구가 심급 제도를 대체하는 법률 판결에 대한 불복종의 절차로 기능하는 것을 불허한다.
- ④ ㉡와 달리 ㉠에서는 관례에 의하여 국가배상 제도의 적용 여부를 확인한다.
- ⑤ ㉠와 ㉡ 모두 특정한 사안을 하급 법원에서 심사하였을 때, 하급 법원 판결의 위법성을 심사하기 위해 해당 사안을 상급 법원에서 심사할 수 있도록 심급 제도를 활용한다.

5. 위 글을 토대로 <보기>에 대해 이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A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였다. A는 적법한 청구 기간 내인 1994년 11월 4일에 심판 청구서를 제출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청구서에 적힌 접수 일자 같은 달 14일로 오인하였다. 헌법재판소는 적법한 청구 기간이 지났음을 이유로 하여 재판관 전원 일치의 의견으로 A의 심판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결정을 하였다. A는 법을 위반한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고 하여 1997년에 법원에 국가배상 청구를 하였고, 2003년에 이 청구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이 내려졌다.

- ① 동일한 사건이 독일에서 일어났을 때, 공무원의 행정적 오류가 민사법의 기준에 의해서만 위법할 경우 A는 2003년에 패소 판결을 받았겠군.
- ② A가 2003년에 최종 패소 판결을 받았더라도 특별한 사유가 존재한다면 다시 국가배상법을 통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겠군.
- ③ 1994년에 국가배상법은 존재했지만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대

한 심급 제도를 통한 항소가 적용되지 않았다면, A는 별도의 재판으로 국가배상 청구를 할 수 없었겠군.

- ④ 1994년에 헌법재판소가 법관으로서 요구되는 책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기에 해당 재판에 대한 기판력은 무효화될 수 있군.
- ⑤ 2003년에 A가 승소했다고 한 후 1994년에 A가 제기한 헌법 소원을 재심 요청하더라도 A가 승소할 것임을 보장할 수는 없군.

수고하셨습니다.

문제를 모두 푸신 분들은 해설지를 확인해주세요.

[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난이도 B+)

2016년 중등임용경쟁시험 국어과 1차 B형

하나의 형태소가 환경에 따라 다른 이형태\*로 실현되는 현상을 교체라 한다. 교체는 대개 그 교체의 조건이 음운에 따른 것인가, 형태나 어휘에 따른 것인가에 의해 음운론적 조건에 의한 교체와 형태론적 조건에 의한 교체로 나뉜다.

현대 국어의 주격 조사 ‘이/가’는 이형태의 교체 조건이 선행 체언의 끝소리가 자음인가 모음인가와 같은 음운적 특성이므로 ㉠ **음운론적 조건**에 의한 교체를 보이는 예이다. 모음조화에 따른 교체 역시 마찬가지로이므로 과거 시제 선어말 어미 ‘-았-’과 ‘-었-’의 교체 역시 음운론적 조건에 의한 교체이다.

이와 달리 특정 형태소나 단어가 조건이 되어 교체가 일어나는 경우를 ㉡ **형태론적 조건**에 의한 교체라 한다. 중세 국어에서 쓰인 ‘이 /의’는 음운적 특성과 상관없이 ‘쇼, 長者, 獅子’와 같은 특정 명사 뒤에서 ‘ㅣ’로 실현되었는데, 이 경우 ‘ㅣ’는 ‘이 /의’와 관련하여 형태론적 조건에 의해 교체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 **이 두 가지 조건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교체**를 설정하는 견해도 있다. 의미적 속성이나 통사적 특성에 따라 교체가 되는 경우도 있다고 보는 것이다. 가령 현대 국어에서 주격 조사 ‘이/가’와 ‘께서’, 여격을 나타내는 ‘에’와 ‘에게’를 이형태로 파악하기도 하는 것이 그 예이다. 그러나 최근에는 이들을 이형태로 파악할 수 없다고 보아 교체로 설명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형태 : 한 형태소가 주위 환경에 따라 음성(音相)을 달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달라진 한 형태소의 여러 모양을 이르는 말.

6. 위 글의 설명에 따라 ㉠, ㉡, ㉢에 알맞게 짝지어진 것은?

	㉠	㉡	㉢
①	애야/아들아	오너라/가거라	부테/불상佛像이
②	네가/꽃이	부테/불상佛像이	너는/그분께서
③	오너라/가거라	그와/친구랑	네가/꽃이
④	바둑아/님하	부테/불상佛像이	너는/그분께서는
⑤	애야/아들아	오너라/가거라	바둑아/님하